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b>제875호 2022. 8. 31.(수)</b></p>	
---	---	---

선 결	기관 의 장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42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3

거창군 규칙 제1343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6

거창군 규칙 제1344호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 19

거창군 규칙 제1345호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28

##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58호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32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94호 도로명주소 고시 ..... 36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203호 가조 학산(310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37

거창군 공고 제2022-1211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 42

거창군 공고 제2022-1225호 산불감시원(순찰감시원, 초소감시원) 모집 공고 ..... 43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2-32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2

<b>회 람</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8월 31일

거창군 규칙 제1342호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5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으로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를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를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b>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li> <li>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li> <li>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li> </ol>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lt;삭 제&gt;</b></p>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

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 제>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삭 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2. (생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삭 제>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2. (생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생략)
-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⑦ (생략)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가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⑥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삭제>**

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48
----------	---------

제출연월일	2022. 8. 19.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 2022. 5. 19.)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과 유사·중복 조항 삭제

-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의2)
- 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5조의3)
- 4)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 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5조의6)
- 7)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안 제13조)
- 8)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16조)

나.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13조의3, 제15조)

- 1) 한자병행하여 알기 쉽게 함: (현행) 전가 ⇒ (변경) 전가(轉嫁)
- 2) 산하기관 구체적으로 명시
- 3) 약칭표현 삭제에 따라 그 용어가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다시 약칭 표현: (현행) 서면 ⇒ (변경)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불필요한 서식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별제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 (안 제15조)

- 1) (현행) 모든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 (변경)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3. 기타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4조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8조~제13조, 제15조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7. 19.~8. 9.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8월 31일

거창군 규칙 제1343호

###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에게도 심의·  
의결권(서면 심의·의결도 포함한다)이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u></p> <p><u>②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u></p>	<p><u>제12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에게도 심의·의결권(서면 심의·의결도 포함한다)이 있다.</u></p>

##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49
----------	---------

제출연월일	2022. 8. 19.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이유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출석한 사람에게도 의결권을 주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여 그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당연직위원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리출석자에게 심의·의결권 부여(안 제12조)

1) (현행) 대리출석자 표결권 없음

(변경) 대리출석자에게 심의·의결권 부여(서면 포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7. 29.~8.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8월 31일

거창군 규칙 제1344호

###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거창군수(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 주관은 소송담당 부서(이하 “주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한다.

②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와 주관부서가 공동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업무 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소송 수행부서를 지정한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업무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주관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주관부서의 장과 수행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6조(소송착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면 수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송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의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고문변호사의 자문, 소송 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해임하는 경우에도 소송수행 방침에 따른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주관부서에서 소송담당주사 포함 2명 이상과 수행부서에서 수행부서장 포함 3명 이상을 지정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민사소송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정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나. 행정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2.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은 적지만 패소하는 경우 군정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군을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별표의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기일에 출석과 진술

4. 승소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패소 사건의 패소원인과 상소 결정

6.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결정

7.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보고 및 지휘관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업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등

2. 변론기일에 참석
3. 승소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4. 패소 사건의 패소원인과 상소 결정
5.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결정
6.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보고 및 지휘관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이 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12조(소송고지)** 소송수행자들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알려 제3자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지정·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군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지정·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수행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여부 등을 결정한다.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시 판결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5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소의 가능성과 상소 이익 등을 검토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의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및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6조(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 임의변제를 청구해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원)
3. 신분증 사본
4. 통장 사본
5.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은 30일 이내에 지휘청(검찰청 또는 법무부를 말한다)에 지휘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법원에 하고 민사소송은 지휘 없이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법원에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조치)** ①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에 관한 조치
  3. 판결금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급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구상권 행사)** ① 수행부서의 장은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수행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심판청구사건의 수행)**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수행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6일 이내에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른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③ 수행부서의 장은 청구 인용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취지



에 따른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21조(행정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행정심판사건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행정소송 본안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그 밖의 소송 비용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의 수행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내용	지급기준	
		착수금	승소 사례금
민사소송 행정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3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없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가. 2천만원 이하 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라.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마.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바. 5억원 초과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400만원+(소송물가액-5억원) ×0.5÷100 = 환산금액 이내	승소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3. 중요사건	10,000,000원 이내	
	4. 상고심 및 환송심 가. 본안심리	1심 본안사건에 준함 (다만, 같은 변호사 선임 시 본안사건의 1/2 이내)	
그 밖의 비용		실제 비용 실제 비용 실제 비용 「공무원 여비규정」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실제 비용	

※ 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퍼센트 추가지급

#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의안 번호	2022-50
----------	---------

제출일자	2022. 8. 19.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 이유

최근 군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군 또는 군수를 상대로 한 재송 건수가 증가추세 있어 소송수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관리를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소송업무의 분장(안 제1조~제3조)
- 나.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및 기한(안 제4조~제5조)
- 다. 소송착수,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안 제6조~제8조)
- 라.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의 업무(안 제9조·제10조)
- 마. 반소, 소송고지, 제3자적 피소사건(안 제11조~제13조)
- 바.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상소, 임의변제(안 제14조~제16조)
- 사. 승소 및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안 제17조~제18조)
- 아. 구상권의 행사(안 제19조)
- 자.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수행, 대리인 선임(안 제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등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7. 13.~8. 2.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8월 31일

거창군 규칙 제1345호

###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3항 단서”를 “제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2조제1항·제2항”을 “제12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제97조 및 제135조제1항·제2항”을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b>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b>제3조제1항</b>에 따른 회계책임관, 통합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p> <p>②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3조제3항</b>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와 같다.</p>	<p><b>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b>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b>제3조제1항 본문</b>에 따른 회계책임관, 통합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p> <p>②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3조제1항 단서</b>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와 같다.</p>
<p><b>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b>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5조제2항</b>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2. (생략)</p> <p>②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3조제3항 단서</b>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p>	<p><b>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b>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4조제2항</b>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3조제1항 단서</b>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p>
<p><b>제5조(예산집행품의)</b>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21조제1항</b>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 (생략)</p>	<p><b>제5조(예산집행품의)</b>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11조제1항</b>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 (현행과 같음)</p>
<p><b>제6조(재정사항의 합의)</b>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22조제1항·제2항</b>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b>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3. (생략)</p>	<p><b>제6조(재정사항의 합의)</b>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12조제1항·제2항</b>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회계관리훈령 <b>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b>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3. (현행과 같음)</p>

제7조(출납원 사망 등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 지정기준) 지방회계관리훈령 제97조 및 제1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제7조(출납원 사망 등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 지정기준)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51
----------	---------

제출연월일	2022. 8. 19.
제 출 자	재무과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2022. 1. 1. 시행)에 따른 규칙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임 훈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및 항 번호 변경함

- 1)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3항 ⇒ 제3조제1항(안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 2) 지방회계관리훈령 제5조 ⇒ 제4조(안 제4조제1항)
- 3)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1조 ⇒ 제11조(안 제5조)
- 4)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2조 ⇒ 제12조(안 제6조)
- 5) 지방회계관리훈령 제97조 ⇒ 제77조제4항(안 제7조)
- 6)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35조 ⇒ 제105조(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77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7. 20.~8. 9.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양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2년 8월 31일

거창군 훈령 제458호

###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제 및 소송업무”를 “절차 등의 업무”로 한다.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법무행정의 종합적인 기획, 심사, <u>통제 및 소송업무</u>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법무행정의 종합적인 기획, 심사, <u>절차 등의 업무</u>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범위)</b> 법무행정의 처리는 「<u>거창군 기획조정 통제규정</u>」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p>	<p>&lt;삭 제&gt;</p>
<p><b>제8조(소송통보)</b> ① 각 부서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제기할때 또는 피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서류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p> <p>1. <u>소송을 제기할 때 - 소송사유 및 소장</u></p> <p>2. <u>피소되었을 때 - 소장</u></p> <p>② <u>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매 변론 후 소송수행 상황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u>소송수행자는 원칙적으로 소관부서 직원중에서 지정 수행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 직원과 공동 수행토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 대리 수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사후 조치절차를 협의하여야 한다.</u></p>	<p>&lt;삭 제&gt;</p>
<p><b>제9조(소송대리인 선임)</b>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u></p> <p>1. <u>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u></p>	<p>&lt;삭 제&gt;</p>

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큰 사건 또는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수입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창군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2. 거창군을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별표 3의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행정심판 청구서의 처리) ①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2일내에 답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거서류를 각 3부 작성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1. 제안이유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규정 삭제(안 제1조, 제8조~제10조)

나. 조직개편 사항 정비(안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31.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호암길 66 등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가조 학산(310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가조면 기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가조 학산(310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4일

### 거창군수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가조 학산(310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기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689m, B=6.5m

####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가조면 기리 1200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055-940-3552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m <sup>2</sup> )	(m <sup>2</sup> )						
	합계			63,713	6,240						
1	가조면 기리	1160-3	도	155	19	수월리	김*환				
2	가조면 기리	1158-5	도	107	29		거창군				
3	가조면 기리	1162	답	510	1		경상남도				
4	가조면 기리	1164	답	849	3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19	이*태				
5	가조면 기리	1200	도	1,859	1,295		국(농림축산 식품부)				
6	가조면 기리	1199	구	720	671		국(농림축산 식품부)				
7	가조면 기리	1165	답	1,238	2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018-3	이*진				
8	가조면 기리	1556	구	3,876	137		국(농림축산 식품부)				
9	가조면 기리	1166	답	1,264	1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164	이*범 외 1				
10	가조면 기리	1167	답	1,318	6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9-7, 에이동 202호 (시흥동,백조파크빌)	어*식				
11	가조면 기리	1190	답	1,248	7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99	박*순				
12	가조면 기리	1191	답	1,294	4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22, 104동 1601호 (이곡동,성서2차서한타운)	신*섭				
13	가조면 기리	1192	답	1,138	7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16	손*모				
14	가조면 기리	1194-1	답	1,458	6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10	박*조				
15	가조면 기리	1194-2	답	768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131-30	박*조				
16	가조면 기리	1194-3	답	1,004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44-9	이*진				
17	가조면 기리	1194-4	답	1,020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44-9	이*진				
18	가조면 기리	1194-5	답	1,299	75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321 오산자이아파트 103-204	이*진				
19	가조면 기리	1194-6	답	1,175	76	충청남도 천안시 와촌동 152-59 남산빌라 2-비01	이*진				
20	가조면 기리	1194-7	답	1,200	4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정로 126, 110동 1303호 (청안동,해인로즈빌아파트 )	구*진				
21	가조면 기리	1194-8	답	879	25	경상남도 진해시 죽곡동 413-3	신*옥 외 5				
22	가조면 기리	1194-9	답	1437	3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로 98(대명동)	유*연				
23	가조면 기리	1194-10	답	1576	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42번길 24(반지동)	유*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m <sup>2</sup> )	(m <sup>2</sup> )						
24	가조면 기리	1194-11	답	1382	3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14	손*모				
25	가조면 기리	1194-12	답	1396	2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02	박*조				
26	가조면 기리	1194-14	답	2416	4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5길 176	유*민				
27	가조면 기리	1194-15	답	2748	12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87	유*영				
28	가조면 기리	1221	임	998	184		거창군				
29	가조면 기리	1582	도	4205	729		국 (국토교통부)				
30	가조면 기리	1218-1	임	586	41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29	기리 학산**회				
31	가조면 기리	1218	도	400	18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29	기리 학산**회				
32	가조면 기리	1583	도	4661	1		국 (국토교통부)				
33	가조면 기리	1556-2	구	5513	244		국(농림축산 식품부)				
34	가조면 기리	1218-3	도	96	8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11	유*계 외 5				
35	가조면 기리	1214-1	도	13	1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93	이*천				
36	가조면 기리	1214	답	741	6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93	이*천				
37	가조면 기리	1213-5	도	6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93	이*천				
38	가조면 기리	1213-3	답	887	8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93	이*천				
39	가조면 기리	1218-2	임	1612	2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29	기리 학산**회				
40	가조면 기리	1213-2	답	2189	5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773번길 13, 113동 403호 (사파동,삼익아파트)	이*주				
41	가조면 기리	1213-1	도	33	33		이*화 외 2				
42	가조면 기리	1217	답	578	4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773번길 13, 113동 403호 (사파동,삼익아파트)	이*주				
43	가조면 기리	1213-4	도	9	9		거창군				
44	가조면 기리	1217-1	도	7	7		거창군				
45	가조면 기리	1216	묘	168	8	석강리	이*희				
46	가조면 기리	1216-1	도	133	133	석강리	이*희				
47	가조면 기리	1216-2	묘	178	80	석강리	이*희				
48	가조면 기리	1425	답	3279	28	대구광역시 동구 을하동로24길 61-3(서호동)	유*석				
49	가조면 기리	1215-3	도	5	5		유*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소유자 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m <sup>2</sup> )	(m <sup>2</sup> )						
50	가조면 기리	1215-1	구	167	4		유*구				
51	가조면 기리	1215-4	도	10	10		거창군				
52	가조면 기리	1215-2	답	258	3	대구광역시 동구 을하동로24길 61-3(서호동)	유*석				
53	가조면 기리	1423	답	872	307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1길 28(상인동)	이*은				
54	가조면 기리	1400-4	도	44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79	임*수				
55	가조면 기리	1423-1	답	295	20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382	임*선				
56	가조면 기리	1422-1	도	116	3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418	이*준				
57	가조면 기리	1421-2	도	10	2	부산 사하구 다대동 924 주공아파트 108동 303호	구*대				
58	가조면 기리	1419-5	도	123	67	부산 사하구 다대동 924 주공아파트 108동 303호	구*대				
59	가조면 기리	1419-7	도	187	13	부산 금정구 금사동 563 예그린아파트 라동 101호	구*권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6.

## 거 창 군 수

1. 사업지구의 명칭 : 2020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 남불,지산,예동지구
2. 사업시행자 : 거 창 군 수
3.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 709필, 221,477.7m<sup>2</sup>
  - 가. 남불지구 : 남상면 임불리 1262-1번지 일원 / 173필, 54,778.2m<sup>2</sup>
  - 나. 지산지구 : 남하면 지산리 1283-5번지 일원 / 372필, 120,219.4m<sup>2</sup>
  - 다. 예동지구 : 신원면 중유리 1484-1번지 일원 / 164필, 46,480.1m<sup>2</sup>
4. 지적확정조서 :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 2022. 8. 26. ~ 2022. 9. 9. / 14일간
6. 공람장소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7. 공람 비치서류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 산불감시원      순찰감시원      모집 공고 초소감시원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2. 08. 30.

## 거 창 군 수

###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산불감시원 : 140명
- 순찰감시원 : 118명

읍·면	합계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인원	118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초소감시원 : 22명

읍면	합계	신원	남상	마리	거창	북상	고제	웅양	가북	주상	가조	남하
인원	22	2	2	2	2	2	2	2	2	2	2	2
초소명		4호 감악산	5호 대룡산	6호 학동마을 뒷산	7호 취우령	8호 윤덕봉	11호 세발제	12호 석정마을 뒷산	13호 천장리산	14호 금귀봉	15호 호두봉	16호 감토산

※ 각 읍·면별 모집 선발

### 2. 종사업무

- 담당읍·면 및 담당초소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 내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농기 행위 단속
-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뒷불감시
-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 산림보호법 위반자 적발 및 보고
- 그 밖에 산불방지업무 보조, 폭설·산사태 등 재난복구, 산림정화활동 등
- 초소감시원은 2인 1조 격일제 교대 근무(초소 미근무시 근무지 담당구역 근무)

3. 사역기간 : 2022 11. 15 ~ 2023 05. 15(사역시작일은 변동가능)

#### 4. 모집방법

- 1차 : 서류전형(30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서류 검증
- 2차 : 실기시험(70점)
  - ※ 실기시험 : 직무수행력평가 실시(체력검정 및 필기시험)
  - ※ 직무수행력평가 70점 이하는 탈락, 인원 미달시 60점 이상도 선발 가능
  - ※ 1, 2차 합산하여 최종선발

#### 5. 응시자격

- 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 거주하는 자
  - ※ 초소감시원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
- 나.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병력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다. 거창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라. 토, 일, 공휴일 구분없이 연속 근무 가능한 자
- 마.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휴대(운영)에 동의한 자
- 바. 관할 지역의 지리, 산림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 1종보통면허 소지자(산불전문예방진화대(지역대) 응시자 해당)

#### 6. 우대조건

- 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나.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에 해당하는자
- 다. 산림교육원 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마.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바. 산불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7. 동점자의 선발 순위

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취업취약계층

다. 직무수행력 평가 성적 우수자

라.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8. 응시 제외 대상자(※2022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준수)

가. 날카로운 작업도구(기계톱, 애초기) 등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 뇌전증(간질), 정신질환 등)

나. 고교·대학교(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단,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

다. 공무원, 사학, 군인 등 공적연금 수령대상자

라. 과거 산림관련 사역 중 불성실자 및 중도 포기자

-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등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등

바. 기타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근로 시작일 기준)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인 2개 이상 사업(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신청자

사.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자(반복 참여자)

※ 단,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반복참여자도 선발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채용

아.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①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자(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② 4억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 단,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소득·재산기준 초과자도 선발총점의 40%를 감점하고 채용

## 9.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토.일, 공휴일 제외)	직무수행력평가	원서교부 및 접수	합격자 발표
2022. 9. 2.(금) ~ 9. 8.(목)	세부일정 추후통보 ※ 읍·면 자체 일정 확인	거주지 읍·면 경제산업담당	2022. 10월 중 개별 연락

10. 합격자 발표 : 실기검정 후 합격자에 한해 유선 혹은 SMS(문자) 통보

### 11. 임금 및 근무조건

가. 일일인부임 : '22년 73,280원 / '23년 76,960원

나. 4대 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다.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산발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으며, 산발발생 시(야간 산발 포함) 반드시 출동 하여야 함(주 1일 휴무, 월 1회 연차)
- 사업특성상 휴일(토, 일) 근무를 실시하며, 평일 대체휴무함.
- 우천 및 강설 등 산발발생위험도가 낮을 경우 휴무 조치(임금 미지급)

### 12. 응시원수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나. 응시원서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13. 제출서류

공 통 서 류	선 택 서 류(해당자에 한함)
1.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 필요 3.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4. 경력 및 이력서 1부, 서약서 1부. 5. 구직등록증 1부.	1. 취업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2. 운전면허증 및 본인소유 자동차등록증 3. 자격증·교육이수증명서 4.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합격 후 제출)

※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등 가산점을 위한 선택서류 사본 미제출시 가점제외

## 1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산불위치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지급 계획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우리 거창군에서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기능 등)를 수집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발제외됨을 사전 알려드립니다.(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의거)
- 나. 응시자는 실기시험 당일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면접 및 실시시험 불참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다.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본 모집공고는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변경시 별도 공고)
- 마. 실기시험에 따른 준비물 : 운동화, 체육복, 필기도구, 손목시계 등
- 바.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사. 본 공고에 의하여 모집된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작거나 같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자가 합격통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경력 및 이력서 1부.  
4. 서약서 1부.

- 순찰감시원  
 초소감시원

##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장 <input type="checkbox"/> 성매매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위기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갱생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22년 한시적용)			
취업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실업기간	20 . . . ~ 20 .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input type="checkbox"/> ( ) 읍·면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① 본 신청서는 본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2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 경 력 및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성 별	남 · 여
	한 자		연락처	
생년월일		주 소		
주요이력 (교육사항 포함)				
소지 자격증				
고 용 기 간	산불방지 관 련 근로기간			
	기 타 산림사업			
기 타				

※ 교육사항은 수료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첨부

# 서 약 서

서약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경남 거창군 읍(면) 길/로  
(세부주소) ( )

응시분야

- 분 야 : 산불감시원 선발 체력검증

주의사항

본 응시 분야는 산불감시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채용 후 어느 정도 체력을 요하는 업무로서 체력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과거 병력이나 본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응시여부를 판단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인은 동 응시분야 체력실기(등짐펌프(15kg) 착용 후 1km 도착시간 측정) 테스트에 임하면서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본인의 체력에 맞게 응시할 것을 서약하고 아울러 무리하게 시험에 응하여 닥칠 수 있는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100% 책임을 지며 거창군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성명 (서명)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거창군 체육시설 내 볼링공 수리서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감경 규정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명확화를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 안

- 체육시설의 개방 및 운영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안 제3조·제6조)
- 체육시설 내 볼링공 수리서비스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 2)
  - 볼링회원의 증가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공 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체육시설 사용료기준 일부 개정(별표1)

- 불링장의 실제 운영방식에 맞게 “월사용 기준”을 정정

구 분		개 정		개정사유
		전	후	
1회권	개인	1회 1게임	1회 1게임	불링장 운영에 적합한 '회, 게임' 단위로 통일함
월사용	1개월	1일 2시간	1회 4게임 (화~금 10: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12회			

- 불링화 대여료 신설 : 1,000원/회 (어린이는 무료)

○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 일부 개정(안 별표 2)

- 사용료 감경률 100분의 30은 국민체육센터에 적용하지 않음  
: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일반인(성인)에 대해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의 사용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음

- 감경기준의 해당사항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됨

나.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안 제3조)

○ 조례 제12조의2(불링공 수리서비스 제공) 신설에 따른 불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정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7. 입법예고기간 : 2022. 8. 30. ~ 9. 19. (20일간)

8.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9. 19.(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국민체육센터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우)50132

○ 전화 : 055)940-8771, FAX: 055)940-877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조 제목 “(시설의 개방)”을 “(시설의 개방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제공)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에게 볼링공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볼링공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20조 조 제목 “(사용자의 책임)”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함에 있어”를 “사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물함 열쇠나 회원카드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분실물의 제작에 드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및 비고란과 별표 2 100분의 30 및 비고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3조(시설의 개방)</b>&lt;삭제 2021.2.17.&gt; <b>&lt;신 설&gt;</b></p> <p>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li> <li>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li> <li>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li> </ol> <p>③~④ (생략)</p> <p><b>제6조(운영시간과 휴무일)</b> ① 체육시설의 개장·종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영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li> <li>나. 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 포함)</li> <li>다.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li> </ul> </li> <li>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li> </ol> <p>②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주 월요일</li> <li>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li> <li>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li> </ol> <p>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b>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b> ①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p> <p>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li> <li>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li> <li>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li> </ol> <p>③~④ (현행과 같음)</p> <p><b>&lt;삭 제&gt;</b></p>

<신 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제공)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에게 볼링공 수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볼링공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물함 열쇠나 회원카드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분실물의 제작에 드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2. 국민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수영 강습비	10,000원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1회권	개인	1,500	2,000	2,500	1회 1게임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del>1회 4게임 1일 2시간</del>
		12회	15,000	20,000	25,000	<del>1회 4게임 1일 2시간</del>
볼링장 사물함	두칸	1개월	1,700			
	세칸		2,500			
<u>볼링화 대여</u>	<u>1회</u>		<u>1,000</u>			<u>어린이 무료</u>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

감경대상	감경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li> <li>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li> <li>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li> <li>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li> <li>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li> <li>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li> </ol>	100분의 80
<p>다음 각 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li> <li>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li> <li>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li> <li>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내</li> </ol>	100분의 50

18세 이하 자녀 14.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15.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100분의 30. 다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2. 그린카드 이용자	100분의 10

비고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감정기준이 중복 될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체육시설의 개장·종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센터

가. 수영장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토요일·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탁구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토요일·공휴일 포함)

다. 볼링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토요일·공휴일 포함). 다만, 월사용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로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중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변상)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물건을 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분실물의 제작비용을 변상한다.

1. 사물함 열쇠 : 5,000원
2. 회원카드 : 500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제1조의2(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매주 월요일</p> <p>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p> <p>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p> <p>② 체육시설의 개장·종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민체육센터</p> <p>가. 수영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토요일·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p> <p>나. 탁구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토요일·공휴일 포함)</p> <p>다. 볼링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토요일·공휴일 포함). 다만, 월사용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로 한다.</p> <p>2. 제1호를 제외한 체육시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6월부터 9월까지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p> <p>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u>&lt;신 설&gt;</u>	<u>제3조(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 조</u> <u>례 제12조의2에 따른 볼링공 수리서비</u> <u>스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u>
<u>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u> <u>외에 사용료의 반환절차, 각종 회계장</u> <u>부의 관리 등은 「거창군 회계관리에</u> <u>관한 규칙」을 준용한다.</u>	<u>제9조(변상)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u> <u>라 물건을 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u> <u>기준에 따라 그 분실물의 제작비용을</u> <u>변상한다.</u> 1. <u>사물함 열쇠: 5,000원</u> 2. <u>회원카드: 500원</u>

[별표]

### 볼링공 수리서비스 수수료

(단위: 원)

항 목	수 수 료
1. 구멍 뚫기	40,000
2. 엄지 교체	가. 국산 10,000
	나. 수입 12,000
3. 중지·약지 교체	4,000
4. 엄지 구멍 메우기	18,000
5. 중지·약지 구멍 메우기	18,000
6. 표면 매끈하게 처리하기	8,000
7. 표면 광택내기	8,000
8. 기름 제거	2,000
9. 전체 수리	50,000

비고

“전체수리”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포함하는 수리를 말한다.

## 관계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